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1월 10일

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성현우



여수시 조례 제2293호

붙임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제6조‘극지활동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여수시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지원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2. “거점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 선박 및 화물의 운송·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지정 또는 검토되는 항만을 말한다.
3. “거점항 지정 지원”이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목표로 한 정책 기획, 사전 검토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2. 국가 북극정책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안

3. 여수시 항만·산업·에너지 인프라 활용 가능성 검토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업무담당 국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항만·물류·에너지·산업·국제협력·해양정책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문단)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시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결과를 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